

## < 교환학생 학점인정 >

### ▶ 국제교류처 파견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이 추천서를 의뢰할 때

1. 수업을 직접 가르치셨던 교수님 혹은 상담지도교수님께 부탁할 것
2. 지도교수 부재시 혹은 국제학과 수업을 거의 수강하지 않은 경우 학과장에게 추천서를 부탁할 것
3. 최소한 추천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교수님께 추천서를 요청할 것

### ▶ 교환학생 학점인정 처리 절차

[성적표 도착알림]-[행정실 방문:학점인정승인서 및 성적표 수령]-[학과장 상담]-[학생 확인 후 본인이 직접 행정실로 제출]

1. 학생에게 성적표 도착 알림(문자발송)
2. 학생에게 학점인정승인서 첨부하여 학과장에게 학점인정 받아오라고 안내  
\*syllabus(강의계획서)와 성적표, **Description of the grading system(학점인정기준표)**를 지참  
\*방학중일 경우 이메일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함
3. 학과장에게 확인받은 신청서에 학생서명 후 행정실로 제출

### ▶ 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

#### 1. 2016학년도 국제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

##### 가. 제3장 전공과정

- 제6조(기타 과목 이수) ①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획득한 학점의 인정과 국내외의 인턴(연수)에 따른 학점부여는 원칙적으로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 국제학과가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특별프로그램의 경우 각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 본교생이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국제학과 전공인정학점은 1학기 파견 시 최대 6학점, 1년 파견 시 최대 12학점이며, 잔여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- ③ 국내외 현장연수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공학점은 장기현장연수활동의 경우 최대 6학점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, 단기현장연수활동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.

##### 나. 부칙

- 제2조(경과조치)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

1. 제5조(대학원 및 타전공 과목 이수), 제6조(기타 과목 이수) ②항과 ③항, 제9조(전공 및 트랙이수학점) ②항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 단,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.

#### 2. 학사운영규정

##### 가.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

- 제 11조(취득학점의 인정) ②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환산 시 Pass(급제, A-D) 또는 Non-Pass(낙제, F)로 기록한다.

- 제 12조(학점수 환산) ② 외국대학에서 ECTS로 취득한 학점은 과목별로 1ECTS당 본교의 0.6학점으로 환산하며 환산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부여한다.

3. 2016-5차 국제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전공필수 및 전공기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취득학점 및 이수구분은 학과장이 결정한다.